

심 의 결 과 위 인 대 로 가 결

의 안 번 호	회 의 차 수	회 의 일 자	제 의 자
제 13 호	제 7 차	1986. 3. 6	총재 박 성 상

의 안 : 「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」 개정

의결사항 : 「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.

제의관계 : 한국은행법 제 7 조
법규조항

제의취지 :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은행의
중소기업대출의무비율을 상향조정하기 위하여 본 건 전기와 같아
의결할 것을 제의함

참고사항 : 제의관계 법규조항 발취

한국은행법 제 7 조

- ① 한국은행에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둔다.
- ②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이 법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통화신용의
운영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명백히
부여된 기타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며 한국은행의 업무, 운영, 관리에
관한 지시 감독을 한다.
- ③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 2 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
모든 규정, 지시를 발할 수 있다.

(이 하 생략)

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개정 (안)

현행	개정 (안)	비고
제 1 조 (생 락) 제 2 조 (여신운용 및 투자지침) 금융기관은 한국은행법 제 73조 제 1항 제 2호에서 정하는 불건전한 여신 또는 투자를 초래하지 않도록 다음사항의 준수에 노력하여야 한다. 1. - 6. (생 락) 7.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의 확대, 특히 시중은행 및 한국외환은행은 원화금융자금대출 증가액의 35%이상, <u>지방은행은 55%이상</u>,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%이상을 각각 중소기업자에게 지원 8. (생 락) 제 3 조 - 제 12 조 (생 락) (신 설)	제 1 조 (현 행 과 같 음) 제 2 조 (여신운용 및 투자지침) 금융기관은 한국은행법 제 73조 제 1항 제 2호에서 정하는 불건전한 여신 또는 투자를 초래하지 않도록 다음사항의 준수에 노력하여야 한다. 1. - 6. (현 행 과 같 음) 7.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의 확대, 특히 시중은행 및 한국외환은행은 원화금융자금대출 증가액의 35% 이상, <u>지방은행은 80%이상</u>,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%이상을 각각 중소기업자에게 지원 8. (현 행 과 같 음) 제 3 조 - 제 12 조 (현 행 과 같 음) 부 칙 (시행일) 이 규정은 1986. 4. 1. 부터 시행한다.	○ 지방은행의 무비율

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개정 (안)

	개 정 (안)	비 고
기관은 한국은행법 불건전한 여신 항의 준수에 특히 시중은행 및 출 증가액의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지원	제 1 조 (현 행 과 같 음) 제 2 조 (여신운용 및 투자지침) 금융기관은 한국은행법 제 73조 제 1항 제 2호에서 정하는 불건전한 여신 또는 투자를 초래하지 않도록 다음사항의 준수에 노력하여야 한다. 1. -6. (현 행 과 같 음) 7.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의 확대, 특히 시중은행 및 한국외환은행은 원화금융자금대출 증가액의 35% 이상, <u>지방은행은 80%이상</u>,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%이상을 각각 중소기업자에게 지원 8. (현 행 과 같 음) 제 3 조 - 제 12조 (현 행 과 같 음) 부 칙 (시행일) 이 규정은 1986. 4. 1. 부터 시행한다.	○ 지방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 상향 조정